

●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1-27호

「금융위원회운영규칙」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1년 7월 22일

금융위원회

1. 개정이유

금융행정의 투명성·책임성 강화를 위해, 의결서를 작성하여 공개하고 단순·반복적인 행정절차 사항 등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

2. 주요 내용

가. 의결서 양식 및 공개방식 개선(안 제10조제1항 및 제2항)

조치이유(판단근거 포함), 근거법규 등 필수 기재항목을 포함하여 양식화한 의결서를 신설하여 제재안건은 개정안의 의결서를 작성·공개

나. 금융위원장 위임사항(안 별표 제5호, 제33호)

유사투자자문업감독 및 서민금융법 관련 과태료

※ 「금융위원회 운영규칙」 개정(20.7.23)에 따라 과태료 위임 상한금액(5천만원) 적용

다. 기존 금융위원장 위임사항 정비

일부 금융업 인허가·승인 심사중단 및 재개여부 결정을 금융위원회 의결사항으로 변경하고, 금융감독원장에게 기 위임된 사항을 위임사항에서 삭제 등

3. 세부 개정 내용

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(www.fsc.go.kr) 정보마당의 ‘법령정보(고시/공고/훈령)’을 참조